

—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조직 역량과 공익서비스 창출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(안 제6조 내지 제9조)
 - 지원계획 수립·공고 ⇒ 신청·접수 ⇒ 심의 ⇒ 결과통보
- 신청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범위를 심의·결정토록 함 (안 제10조)
- 사후평가,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규정을 둠 (안 제18조,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14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
-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(행정자치부)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따른 구미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임

-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현행 정액 보조제도를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의 특성, 사회적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단체 및 보조금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
-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